

예산총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54,283,946	13,628,518
일반회계	426,331,570	12,789,947
특별회계	27,952,376	838,571
기타특별회계	27,952,376	838,571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49,133	16,474
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	1,615,100	48,453
성진강댐특별회계	830,085	24,903
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1,405,025	42,151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2,839,433	685,183
하수도사업특별회계	713,600	21,408

제 2 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
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
제 4 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6,500,000천원」으로 한다

제 5 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4,394,171천원」과 같다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